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9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6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박 정 · 송옥주
김태선 · 김남국 · 안태준
장종태 · 박용갑 · 강준현
홍기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의료법」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·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, 「의료법」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.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,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·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

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「의료법」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7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91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뇌사판정대상자”를 “뇌사판정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뇌사추정자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열람”을 “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장기구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무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등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제20조제7항”을 “제20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~ ⑤ (생 략)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 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 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 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 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.	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뇌 사판정대상자(이하 이 조에서 “뇌사추정자등”이라 한다)----- -----확인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⑦ 장기구득기관은 제6항에 따 른 의무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뇌사추정자등에 대 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⑦ · ⑧ (생 략)	⑧ · ⑨ (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)
제36조(지정취소 등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등록기관, 장기구득기 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 다음	제36조(지정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

